

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(제91조의2제1항 관련)

1.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

시험조건	세부 적용차종	기준
가.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	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	1)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연료장치에서의 연료누출이 없을 것
나. 매시 56킬로미터로 자동차를 변형 구조물에 40퍼센트 부분 정면 충돌시킬 때	초소형승용자동차, 제10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	2) 연료장치에서의 온도보정 압력은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시험 전 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것 3) 연료탱크는 자동차의 부착지점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
다.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950kg±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	초소형자동차, 제10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	
라. 매시 32킬로미터로 자동차의 길이방향 중심선에 75도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옆면을 충돌시킬 때	제10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표 14의 8의 기둥측면충돌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	
마. 매시 48킬로미터~52킬로미터의 속도로 1,100kg±20kg 중량	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	

의 이동벽을 자동차 의 뒷면에 충돌시킬 때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2. 차량총중량 4.5톤 이하 승합자동차

시험조건	기준
가. 매시 48킬로미터~5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	1)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연료장치에서의 연료누출이 없을 것 2) 연료장치에서의 온도보정 압력은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시험 전 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것
나. 매시 32킬로미터의 속도로 1,805kg $\pm$ 1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	
다. 매시 48킬로미터의 속도로 1,805kg $\pm$ 1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충돌시킬 때	3) 연료탱크는 자동차의 부착지점으로 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